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1월 17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11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06. 12. 12) 상정

○ 제1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06. 12. 12) 수정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김 창 열)

가. 제안이유

-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부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며, 우리시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그 종사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시장은 기업관련 홍보·교육,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 및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는데 노력하도록 함. (안 제3조)
- 기업사랑운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 및 규제 사항 해소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기업사랑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4조)
- 위원회는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시책 발굴, 기업애로사항 협의 및 우수선도기업·세계적 우수기업선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

-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단체의 임원, 기업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의원 2인,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6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도록 함. (안 제7조 내지 제9조)
- 시장은 위원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출판로 지원, 기술지원, 인력양성지원, 입지지원 및 기업관련단체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내지 제16조)
- 기업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에 기업민원 1회 방문 처리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 일정기준 이상의 우수기업인에 대하여는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참가 우선지원, 지방세 세무조사시기 선택, 공원 및 공영주차장 등 사용료 면제, 시행사 VIP초청 등 예우에 관한 기준을 정함. (안 제18조 내지 제19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제19조 3항 우수 기업인들에게 지방세 세무조사시기 선택권 부여 문제는 지방세정 행정 추진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삭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 세정 담당부서와 협의 우수기업 지원 차원에서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 지방 세정행정 추진에 따른 타 기관 및 업계 등과 비교 시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세무조사 시기 선택권의 부여는 바람직한 지원책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됨.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49호
의결 년월일	2006. 12. 21

제안년월일 : 2006. 12. 12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지방 세정행정 추진에 따른 타 기관 및 업계 등과 비교 시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세무조사 시기 선택권의 부여는 바람직한 지원책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2. 주요골자

- 우수기업인에게 지원 및 예우 종류중 ‘지방세 세무조사시기 선택권 부여’는 삭제함.
(안 제19조의 2)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19조 중 '4항'을 '3항'으로, '5항'을 '4항'으로, '6항'을 '5항'으로, '7항'을 '6항'으로, '8항'을 '7항'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9조(종류) 시장은 우수기업 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p> <p>1 - 2(생략)</p> <p>3. <u>지방세 세무조사시기 선 택권 부여</u></p> <p>4 - 8(생략)</p>	<p>제19조(종류).....</p> <p>.....</p> <p>.....</p> <p>1 - 2(제정안과 같음) (삭 제)</p> <p>3 - 7(현행과 같음)</p>

[수정안 포함]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그 종사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시 안에 본사·지사 또는 기타 사업장 등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시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단체”라 함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중요성을 홍보·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 및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업사랑추진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기업사랑운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 해소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업사랑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협의
3. 우수선도기업, 세계적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단체의 임원
2. 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회 의원 2인
4. 시 소속공무원

③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기업활동 지원

제12조(판로 및 수출 지원) ①시장은 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 지원) ①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기술연구,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지원과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인력양성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입지 지원) 시장은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기업의 증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 및 제3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16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업민원 1회방문처리 지원단 설치·운영) ①시장은 기업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민원 1회방문처리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기업민원을 신속·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필요시 변호사·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을 기업민원처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지원 및 예우

제18조(대상)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근로자(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에게는 지원 및 예우할 수 있다.

1. 시에서 수여하는 부천중소기업대상, 벤처기업 우수제품 대상 등을 받은 우수기업인
2.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장관이상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인
3. 경제관련단체에서 주관하여 수여하는 기업관련 표창 중 시장 또는 도지사 이상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인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 대하여 3년간 지원 및 예우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종류)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우선 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체육공원·공영주차장 등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4.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5. 시정소식지 등 무료배부 및 제공
6. 각종 기술지원 사업에 가점부여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20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및 예우를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우수기업인 지정 당시의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제21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집행·정산 등에 관하여는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